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소득공제율별 공제항목의 범위는 제2호를 따른다)

구분	금액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최저사용금액 × 15퍼센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30퍼센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30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40퍼센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3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40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60퍼센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최저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3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4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60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80퍼센트

2. 소득공제율별 공제항목의 범위

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율	공제항목
15퍼센트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이하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30퍼센트	2)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이하 "특례기

	간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하 "특례기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40퍼센트	5)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이하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6)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이하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60퍼센트	7)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 8) 특례기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80퍼센트	9)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 10)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

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율	공제항목
15퍼센트	1)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30퍼센트	2)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 3)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0퍼센트	4)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5)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60퍼센트	6)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
80퍼센트	7)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 8)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